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1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3월 30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장애인, 고령자 등의 정보취약계층의 상품권 이용편의를 확보를 위해 안 제4조제4항에서 삭제된 상품권의 권면금액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, 조례의 시행을 조례 공포일에 맞추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상품권 권면금액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함(안 제4조제4항).
-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4월 20일에서 조례 공포일로 수정함(안 부칙).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
2. 권면금액은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수정안 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~ ③ (생략) <u>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<u>권면금액은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이 조례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<u>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<u>권면금액은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,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서울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) ① 시장은 사용자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,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서울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·판매·환전하기 위한 자금(이하 “상품권운영자금”이라 한다)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·관리 현황을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출하여야 하며,”를 “제출하여야 한다.”로, “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.”를 “다만,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“업종으로서”를 “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단서를 “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”로 신설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제2호 중 “제한업종”을 “제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제3항과 제4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(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)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시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⑦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.

제8조의 제목 “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”을 “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”으로 하고, 제1항 및 제2항, 제3항 중 “운영대행사와

판매대행점”을 각각 “판매대행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”을 “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”으로 하며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 중 “공동 운영대행사”를 “판매대행점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공동 운영대행사”를 “판매대행점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호 중 “운영대행사”를 “판매대행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9조(사업 및 지원)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
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
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
원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·운영 및 유
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
의 선정·관리 사업

② ~ ③ (생략)

제11조(재정지원의 조건)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자
치구를 지원을 할 때에 제9조 제3항에 따른 조치
및 제8조에 따른 공동 운영대행사 이용 등을 조
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) 시장은 상
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
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
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둘 수
있다.

1. (생략)
2. 운영대행사 운영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3. (생략)

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
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「지역사랑
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보
호법」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
한다.

제9조(사업 및 지원) ① -----

1. ~ 3. (현행과 동일)
4. -----
----- 판매대행점 -----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재정지원의 조건) -----

----- 판매대행점 -----

제12조(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)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판매대행점 -----
3. (현행과 같음)